

『e-플러스 적금』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2.01.20 현재, 세전)

구 분	내 용			
상품특징	비대면 채널 전용 적립식 상품, 첫 거래 손님과 휴일 가입 시 우대금리 Up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2계좌)			
가입기간	1년, 2년, 3년			
저축방법	• 신규 가입금액 최대 1백만원 이내 • 자유적립식, 추가로 불입 시 1회 최저 1천원 이상, 1개월 불입한도 1백만원 이내 * 불입한도는 계좌당 한도금액임			
적용금리	(2022.01.20 현재, 세전)			
	기간	1년	2년	3년
	금리	최저 연 1.35% ~ 최고 연 2.55%	최저 연 1.45% ~ 최고 연 2.65%	최저 연 1.55% ~ 최고 연 2.75%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우대금리 적용				
재예치/일부해지	x		재예치 및 일부 해지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중도해지금리	기간	중도해지금리	
	1 개월 미만	연 0.10%	
	1 개월 이상 ~ 3 개월 미만	연 0.15%	
	3 개월 이상 ~ 6 개월 미만	연 0.20%	
	6 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주 1) x 경과율 ^(주 2)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	
	^(주 1) 차등율 : 기간(6 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6 개월 이상 ~ 9 개월 미만 경과시	9 개월 이상 ~ 11 개월 미만 경과시	11 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만기후 금리	^(주 2)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 1 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의 1/2		
	• 1 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의 1/4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플러스 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e-플러스 적금』
- 상품특징: 첫 거래 우대, 휴일 가입 우대, 스마트폰뱅킹 가입 우대 등 다양한 금리 혜택!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콜센터, 태블릿브랜치(영업점) 또는 이동식하나은행(포터블)에서만 신규 가능한 적립식 수신 상품임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약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2.01.20 현재, 세전, 연이율)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 1인 2계좌			
거래방법	■ 신규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고객센터, 영업점 태블릿브랜치 또는 이동식 하나은행(포터블)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상품유형	적립식 예금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계약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100만원 이내			
적립한도	1천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계좌당 월 불입 한도 100만원 이내 (단, 계약기간의 2/3 경과 시부터 만기직전까지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액 합계는 이전 적립금액 1/2 초과 불가)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기본금리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22.01.20 현재, 세전)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기본금리	연1.35%	연1.45%	연1.55%
우대금리 (최대 연1.2%)	예금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2%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시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① 이 예금을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또는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스마트폰뱅킹 신규 가입 시 연 0.1% 우대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은행 통장에서 본인 명의 하나 카드사 또는 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을 시 연 0.1% 우대 ③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 0.1% 우대 ④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주 1)에게 연 0.5% 우대 ⑤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주 2)에 가입 시 연 0.4% 우대 ⑥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주 2)을 제외한 은행 비영업일에 가입 시 연 0.2% 우대 (주 1) 이 예금가입 전월 말 기준 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포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 (주 2) 추석 또는 설날 공휴일과 당해 공휴일에 연속된 은행 비영업일 포함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 개월 미만	연 0.1%
1 개월 이상 ~ 3 개월 미만	연 0.15%
3 개월 이상 ~ 6 개월 미만	연 0.2%
6 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 ^(주 3) x 경과율 ^(주 4) (단, 연 0.2% 미만 시 연 0.2%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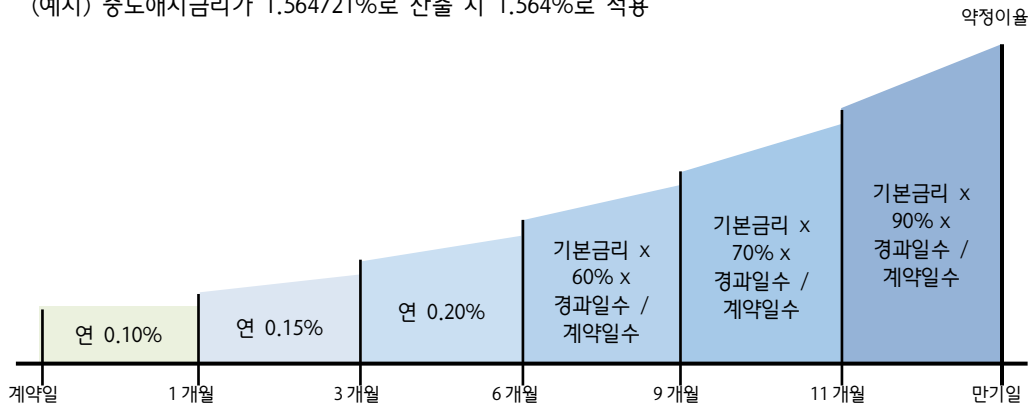
(주 3) 차등률 : 기간(6 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 개월 이상 ~ 9 개월 미만 경과시	9 개월 이상 ~ 11 개월 미만 경과시	11 개월 이상 경과시
60% 적용	70% 적용	90% 적용

(주 4)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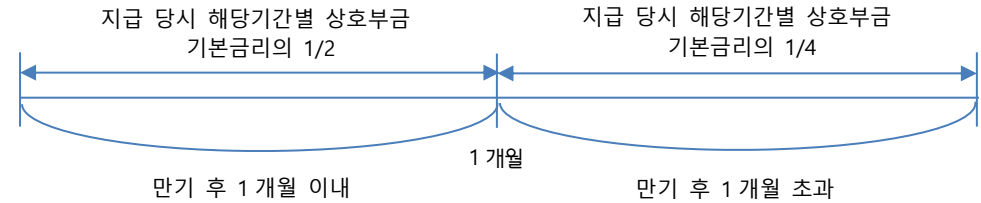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 시 1.564%로 적용



중도해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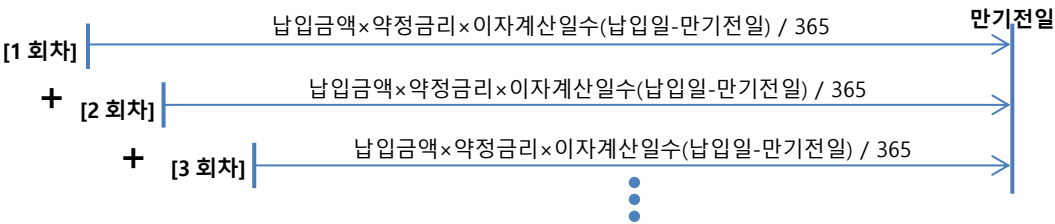
- 1 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의 1/2
- 1 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기본금리의 1/4

만기 후 금리



저축금 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이자 계산
[이자계산식] 납입금액 x 약정금리 x 이자계산일수(납입일~만기전일) / 365

이자계산방법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만기앞당김 지급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만기앞당김 지급 불가

일부 해지

불가

자동이체	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및 자동 만기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 비대면 채널에서의 해지는 일부 제한사항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가능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 하며,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장발행	이 예금은 통장 미발행 가능
세 제 예 택 (개인, 개인사업자)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양도 및 담보 제공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휴면예금 및 출연	■ 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연계 • 제휴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센터(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 적용되며,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로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디지털경험본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 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록**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설 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체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 • 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율)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